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군 보 건 의 료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군보건의료인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이하 ‘군인’이라고 한다)과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과 군무원 외의 의료인 등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군보건의료인의 범위 확대(안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2022. 00. 00.)

대통령령 제 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군인 및 군무원 외의 의료인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병(兵)과 군무원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제2조 (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군인 및 군무원 외의 의료인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 4. 좌 동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보건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654